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371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105177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3715 판결

전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철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변 론 종 결 2021. 11. 9.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망 C(D생, 2020. 4.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19. 2. 15. 접수 제8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망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19. 2. 15. 접수 제8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0. 망인과 사이에, ‘한도금액: 30,000,000원, 대출기간: 2년, 이자율: E조합 MOR(1년 변동)’의 자립예탁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19. 2. 13. 망인과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2. 15.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위 대출계약에 따른 27,646,845원의 대출 원리금 채권이 있었고, 망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망인과 가장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망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과 가장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과 근접한 2019. 7. 8. 망인과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망인은 피고와 혼인한 2011년경부터 협의이혼한 2019년경까지 약 12,000,000원이 연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당시 슈퍼마켓, 노점상 등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1. 주식회사 F 앞으로 ‘채권최고액 43,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도 전인 2016. 9. 7.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데, 망인의 연소득이 약 12,000,000원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피고가 얻은 소득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증여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약 3,200,000원의 금융기관 예금 등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약 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위 채무가 피고와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였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의 자녀들 중 G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하였고, H은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G와 H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산분할로써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상

